

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7. 24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7월 13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6년 7월 1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6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2차 시민행정위원회(2006. 7. 24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기구개편 및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별도 청사 필요시 신청사 건립 이전에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신설 기구개편 등으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임대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(안제4조제5호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